

대한석탄공사 주요 감사 결과

1. 감사 개요

□ 감사 배경

- '25년도 국정감사에서 대한석탄공사 임원의 비위행위 의혹에 대해 산업부 감사 요구 및 A의 파면 진정서 관련 감사 실시

□ 감사 기간 : '25. 11. 3~14., 11. 18.~21.(14일간)

□ 처분요구일 : '26. 3. 16.

2. 감사 결과

- (채용 절차 위반) A의 지인 및 직제규정에 없는 부사장 채용 시도, 특별 인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변경하여 채용공고 진행 사실 등 확인
- (출장 전자문서 삭제) '24.11월~'25.9월, 29건의 국회 출장 중 목적 미달성을 이유로 15건을 삭제 지시하여 출장문서가 삭제된 사실 확인
- (특정 업체와 계약) A의 지시로 계약체결 전 이미 CCTV 설치 완료 후, 해당 업체와 계약을 지시하여, 사후 계약체결 및 비용 지급 사실 확인
- (기타 업무처리 부적정 등) 인맥을 활용한 신사업 추진, 자체 감사 부실, 탄광 입갱 절차 미준수 및 예산 집행 부적정 등 사실 확인
 - 정상적인 선정 절차를 생략한 채 연구과제(풍력설비 개발 등) 임의 선정, 공모 등 해당 절차를 생략하고 A의 지인이 대표로 있는 민간 영리법인을 연구기관으로 임의 선정(MOU 체결)한 사실 확인

- 순직자 추모행사, 정부정책과 비전 불일치 의혹 등에 대한 자체 감사에서 사실과 다른 결과 도출 등 부실하게 감사업무를 처리한 사실 확인
- 외부인의 갯내 투어를 진행하면서 입갯 전, 자율 서명 별지 각서 미작성 및 안전장화를 미착용한 채 갯내 투어를 진행한 사실 확인
- A 취임 축하로 받은 화분의 리본을 공사 예산을 사용하여 재구매하여 예산 낭비, 기관장 경영성과협약서상 성과목표와 배치되는 내용을 경영 방침으로 제시 및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등에 미공시한 사실 확인
- 비축장 시료 채취 공사 시, 계약 전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 시행 및 과다 설계된 내역서에 대한 검토 없이 업무를 처리한 사실 등 확인
- 직제에도 없는 특별감찰관을 인사발령 없이 임의 운영한 사실 확인

3. 조치 내용

- 채용 절차 위반, 출장 전자문서 삭제 지시 및 특정 업체와 CCTV 설치 계약 지시에 대해 “수사 의뢰” 및 관련자 등에게 비위 수위에 따라 “인사자료 통보(해임 요구)”, “문책” 조치 요구
- 시료 채취 공사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 등에게 비위 수위에 따라 “문책” 및 “경고” 조치 요구
- 자체 감사 부실 처리에 대해 관련자 “경고” 및 갯내 입갯 시 자체 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기관에 “경고” 조치 요구
- 기관 예산으로 리본 재구매 한 비용 165천원에 대해 “시정(환수)” 조치 요구
- 연구과제 및 위탁연구기관 선정 관련 규정 준수, 경영공시 운영지침에 따라 공시 대상 관리 철저, 직제규정에 근거하여 인사 발령 조치토록 기관에 “통보”